

「동계올림픽생활권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경위

-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6. 4. 21(목) 평창군수(기획감사실장)
- 상정일자 : 2016. 5. 4(수) 제217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2차 본회의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영월군·평창군·정선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동발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규약의 구성(안 제3조)
 -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,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 - 위원은 각 지자체장, 생활권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
- 규약의 기능(안 제5조)
 -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
 -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-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
- 규약의 운영(안 제6조)
 - 회장은 영월군수, 평창군수, 정선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운영
 -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직무 수행 불가 시 부군수가 대행

○ 회의 개최 및 의결(안 제7조)

- 정기회의 연 1회, 임시회의 수시 개최
- 의안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

4. 검토결과

○ 본 동의안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에 따라 평창군·영월군·정선군의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권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 제3조 및 제5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및 기능
-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
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협의회 회의 및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
-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경비 부담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본 규약은 지방자치단체간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규약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【관련법령】

□ 「지방자치법」

-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